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6월 23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김진표

## ●대통령령 제19546호

###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립학교법시행령”을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출연증서
3. 인감증명
4.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라 한다) 또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월) 안에 학운위 또는 평의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학운위 또는 평의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학운위 또는 평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학교법인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④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학운위 또는 평의위원회가 협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자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학운위 또는 평의위원회의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⑤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⑥개방이사의 추천방법·추천절차 및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하여 동조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중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하여 동조를 제9조의3으로 하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

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비회계로부터의 진출·대여에 관한 사항)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회의비·사무직원 인건비·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교비회계에서 당해 법인회계로 진출·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진출·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회장은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진출·대여를 요청하고, 학교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진출·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중 “제출시기”를 “보고 및 공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 “관할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출”을 “보고”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입학정원이 2,000명이상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산업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으로, “전문대학이하”를 “고등학교 이하”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대학·산업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미만인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회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

제1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제2항제3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하고, 제18조제1항 본문중  
“법 제45조제2항”을 “법 제45조”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  
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⑤임면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하여 공개  
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  
하되,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1항중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을 “시·도의 교육  
감”으로 하고,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특별시·광역시·도”를  
“시·도”로 하며, 동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법 제45조제2  
항”을 “법 제45조”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5  
항제1호중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대학설립·운영 규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  
호중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한국사학 진흥재단법」”으로 하며, 제1  
2조제2항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이유

개방이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사립학교의 운영상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7802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관할청의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영 제7조의2 신설)

- (1)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방이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학교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안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

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함.

나.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및 공개기간 등(영 제8조의 3 및 제8조의4 신설)

- (1) 법률에서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및 공개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이사회 회의록의 전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의록 비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이사회 회의록 중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도록 함.

다.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영 제9조의2 신설)

- (1) 임원취임의 승인에 대한 관할청의 취소권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취소권의 불합리한 행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등에는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기능(영 제10조의6 신설)

(1) 법률에서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의를 두도록 함에 따라 교육 및 학교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심의되게 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의 인사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학평의원회의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의원회의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6년 6 월23일**

**국 무 총 리      한 명 속**

**국 무 위 원      김 진 표**  
**교육인적      김 진 표**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19547호**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①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관할청이 위촉 또는